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 예정이었던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기불황 및 차량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3년간 50% 경감하여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 행정자치부(경상북도)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 사항 임.

2. 주요골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5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및 부칙<법률 제6060호, 1999.12.28>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 경상북도 재정과-15625(2004.12.22)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
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 <u>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 <u>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